

## 교환학생 (D 2 6)

### 신청 요건:

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.

유학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거주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단수비자(유효기간 3개월)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.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비자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서류의 정확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.

### 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, 수수료 \$60
  2. 여권 원본 및 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  3.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  4.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, 초청 대학의 공문
  5. 소속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
  6.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 7. 체재비 입증서류
  - ※ **보증인 1, 2:**
    -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(3촌 이내)
    -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및 재직증명서
    -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(사회보험증, 납세증명서 등)
  8. 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    - 미성년자(19세 미만 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 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제출)
  9. 무범죄증명서(만 18세 이상, 최초 신청자에 한함)
  10. 결핵 진단서(당관 지정기관 발행)
  11. 어학능력 입증서류(어학능력 요건 요구 대상대학 경우에만 해당, 2019.10.01.부터 적용) 한국어능력(해당 사항을 체크하세요)
- ※ **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**  
**영어 능력(해당 사항을 체크 하세요)**  
**TOEFL 510**